의 안 번 호

2255

【울산광역시 중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O 제 출 일 자: 2023. 5. 2.(목)
- O 제 출 자: 박경흠 의원 외 7명
- O 위원회 회부일자: 2023. 5. 2.(목)
- O 위원회 심사일자: 2023. 5. 17.(금)

# 2. 제안설명 요지(박경흠 의원)

#### 가. 제안이유

○ 최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범죄가 증가하고 청소년들 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에 쉽게 노출되는 등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 남용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통하여 구민 보건향상과 건강한 사회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O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O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실태조사 등(안 제4조)
- O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등(안 제5조)
- O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 다. 근거법규

- O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2조의2
- O「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
- O「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동학)

- 최근 사회적으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범죄가 증가하면서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심각해지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에 쉽게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마약류 중독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알리고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구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조성을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예방 사업 및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 O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 상위법에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4. 심사결과: 원안가결

# 근 거 법 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 2.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 나. 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 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다. 코카 잎[엽]: 코카 관목[(灌木):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 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限 外麻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 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4.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 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 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 나.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 1.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한 계획 또는 시책의 수립·시행
- 2.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 운영
-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 4.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 5.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 · 이행의 확인 및 지원
-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환각물질)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7, 8, 1.〉

- 1.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 2. 제1호의 물질이 들어 있는 시너(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기용 제를 말한다), 접착제, 풍선류 또는 도료
- 3. 부탄가스
- 4. 아산화질소(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